

더샵 신부센터라 입주자모집공고(정정 공고)



기준 - 2)가전제품(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0P

정정 - 2)가전제품(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2P

품목 및 선택사항		주택형	세부사항		품목 및 선택사항		주택형	세부사항	
인덕션 3구	삼성	전 타입	NZ63B5056SK	※ 84A,84C,101타입 주방평면 특화 선택시 인덕션 옵션이 포함됨.(중복선택 주의)	인덕션 3구	삼성	전 타입	NZ63B5056AK	※ 84A,84C,101타입 프리미엄키친, 주방평면 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인덕션 옵션이 포함됨.(중복선택 주의)
	LG		BEI3GTBI			BEI3GTBI			
식기세척기	삼성	전 타입 (59A,59B형 제외)	DW60T7075FS		식기세척기	삼성	전 타입 (59A,59B형 제외)	DW60T7075FS	
	LG		DUB22SB			LG		DUB22SB2	

기준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1P

■ 59A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가구 및 마감재	디자인월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벽판넬+픽처레일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디자인월(프리미엄 키친 B 선택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정정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5P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가구 및 마감재	디자인월 (프리미엄 키친 A 선택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벽판넬+픽처레일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디자인월 (기본주방, 프리미엄 키친 B 선택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기준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2P

■ 59B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가구 및 마감재	디자인월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픽처레일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디자인월 (프리미엄 키친 B 선택 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 판넬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정정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5,46P

■ 59B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가구 및 마감재	디자인월 (프리미엄 키친 A 선택 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픽처레일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디자인월 (기본주방, 프리미엄 키친 B 선택 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 판넬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기준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2,43P

■ 84A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평면	프리미엄 키친	대면형주방(11자형 주방)+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인덕션+디자인 후드+벽판넬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가구 및 마감재	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 선택시)	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 선택시)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정정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6,47P

■ 84A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평면	프리미엄 키친	대면형주방+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인덕션+디자인 후드+벽판넬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가구 및 마감재	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기준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4P

■ 84C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	-----------	------	------	----------	----------	---------	----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평면	프리미엄 키친	대면형주방(11자형 주방)+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인덕션+디자인 후드+벽판넬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가구 및 마감재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2,700,000	1,270,000	1,270,000	10,16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 선택시)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12,800,000	1,280,000	1,280,000	10,240,000	

정정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8P

■ 84C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평면	프리미엄 키친	대면형주방+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인덕션+디자인 후드+벽판넬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가구 및 마감재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2,700,000	1,270,000	1,270,000	10,16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12,800,000	1,280,000	1,280,000	10,24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기준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5,46P

■ 101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평면	프리미엄 키친	대면형 주방(11자형 주방)+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 +인덕션+디자인 후드+벽판넬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 아일랜드 및 냉장고장 위치 변경
가구 및 마감재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4,000,000	1,400,000	1,400,000	11,20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 선택시)		12,300,000	1,230,000	1,230,000	9,84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14,500,000	1,450,000	1,450,000	11,600,000	

정정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9P

■ 101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평면	프리미엄 키친	대면형 주방+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 +인덕션+디자인 후드+벽판넬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 아일랜드 및 냉장고장 위치 변경
가구 및 마감재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4,000,000	1,400,000	1,400,000	11,20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14,500,000	1,450,000	1,450,000	11,60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2,300,000	1,230,000	1,230,000	9,840,000	
--	----------------------------------	---	------------	-----------	-----------	-----------	--

기준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46P

■ 150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가구 및 마감재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5,700,000	1,570,000	1,570,000	12,560,000	포슬린타일 600*600

정정 -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50P

■ 150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가구 및 마감재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5,700,000	1,570,000	1,570,000	12,560,000	포슬린타일 600*600

기준 - 루미나 감성조명	정정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입주자 모집공고의 추가선택품목 및 유의사항에 '루미나 감성조명'으로 반영됨.	입주자 모집공고의 추가선택품목 및 유의사항에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로 정정함.

■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 유의사항

기준 46,47P	⑦ 스타일링바스 선택시 스타일링바스와 복도 공간 사이 도어는 포켓도어로 시공됨. 케어룸 선택시 케어룸과 복도공간 사이 도어는 여닫이도어가 시공됨. 스타일링바스와 케어룸 미선택 시 욕실 전실공간과 복도 사이에는 목창호 여닫이 도어가 설치됨. ⑧ 84A, 84C, 101 타입의 주방평면특화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평면 및 기본형 주방가구로 설치되며 기본 가스쿡탑과 침니형후드(기본형)가 설치 됨. ⑨ 주방평면특화 및 프리미엄 키친 유상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 구동방식, 하부장 열림방식(서랍유/무), 약세서리, 수납장 내부에 설치된 하드웨어(힌지/서랍재 등 부자재), 수납장 구성 등이 변경됨. ⑩ 주방평면특화 및 프리미엄 키친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 약세서리가 상이함. 주방 유상옵션 미선택시 일반 약세서리로 설치됨. ⑪ 주방평면특화 및 프리미엄 키친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주방/식당 등기구 개수 및 위치가 변경됨.
정정 50,51P	⑦ 스타일링바스 선택시 스타일링바스와 복도 공간 사이 도어는 포켓도어로 시공됨. 케어룸 선택시 케어룸과 복도공간 사이 도어는 목창호 여닫이도어가 시공됨. 스타일링바스와 케어룸 미선택 시 욕실 전실공간과 복도 사이에는 목창호 여닫이 도어가 설치됨. ⑧ 84A, 84C, 101 타입의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평면 및 기본형 주방가구로 설치되며 기본 가스쿡탑과 침니형후드(기본형)가 설치 됨. ⑨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및 프리미엄 키친 유상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 구동방식, 하부장 열림방식(서랍유/무), 약세서리, 수납장 내부에 설치된 하드웨어(힌지/서랍재 등 부자재), 수납장 구성 등이 변경됨. ⑩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및 프리미엄 키친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 약세서리가 상이함. 주방 유상옵션 미선택시 일반 약세서리로 설치됨. ⑪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및 프리미엄 키친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주방/식당 등기구 개수 및 위치가 변경됨.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견본주택 운영안내
- 더샵 신부센터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더샵신부센터라.kr)운영 및 견본주택 관람인원 제한 및 방문예약을 통한 관람을 병행하여 운영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예약제로 실시하며, 관람 예약은 홈페이지(http://www.더샵신부센터라.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견본주택 관람 인원은 예약자 외 동반 1인으로 제한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노약자 및 어린이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입장 전 사전예약 확인 및 견본주택 방문 기록을 위한 QR 코드 인증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시 견본주택에서 실시/제공하는 검역·방역 절차 및 위생 도구 착용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에 한하여 청약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및 분양계약 체결 목적에 한 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방문객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샵 신부센터라 견본주택 입장 제한사항 안내	①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②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③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열화상 카메라, 전신 소독기,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 소독제 등) ④ 기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입장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지침 위반시 견본주택 퇴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533-2386)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샵 신부센터라 대표전화(1533-238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14.**입니다.(청약 자격 조건,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1년이상**

거주 신청자(2021.10.14.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 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중복청약 접수 관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 및(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1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더샵신부센터라.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에 대한 전매 행위시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전용 59A, 84B, 101 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주택형은 안내 책자 및 세대 모형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전시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증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분양(전매)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1.10.14.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서류제출 및 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2년 10월 24일(월)	2022년 10월 25일(화)	2022년 10월 26일(수)	2022년 11월 3일(목)	2022년 11월 4일(금) ~ 11월 12일(토)	2022년 11월 15일(화) ~ 11월 17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홈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10:00~16:00)	방문계약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샵 신부센터라 견본주택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한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샵 신부센터라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82, 문의 : 1533-2386) ※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등의 방식/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지 예정임.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이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 주택과 - 42172호(2022.10.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3층 9개동, 총 592세대

[특별공급 291세대(일반[기관추천] 54세대, 다자녀가구 48세대, 신혼부부 109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6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주거	주거	소계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세대수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세대수
민영 주택	2022000722	01	059.9232A	59A	59.9232	25.1298	85.0530	37.0119	122.0649	33.9191	87	9	-	18	1	18	46	41	5
		02	059.9678B	59B	59.9678	22.1547	82.1225	37.0396	119.1621	33.9444	15	1	-	3	-	2	6	9	1
		03	084.9291A	84A	84.9291	25.4395	110.3686	52.4571	162.8257	48.0735	83	8	8	16	2	8	42	41	2
		04	084.9319B	84B	84.9319	27.3630	112.2949	52.4588	164.7537	48.0751	242	24	24	48	7	24	127	115	13
		05	084.9526C	84C	84.9526	28.0055	112.9581	52.4715	165.4296	48.0868	121	12	12	24	4	12	64	57	6
		06	101.8723	101	101.8723	26.2457	128.1180	62.9221	191.0401	57.6644	40	-	4	-	2	-	6	34	2
		07	150.2776	150	150.2776	47.2176	197.4952	92.8200	290.3152	85.0636	4	-	-	-	-	-	-	4	-
합 계											592	54	48	109	16	64	291	301	29

■ 주택형 약식표기

(단위 : m²)

입주자 모집공고(청약 시 주택형)	059.9232A	059.9678B	084.9291A	084.9319B	084.9526C	101.8723	150.2776
약식표기 주택형	59A	59B	84A	84B	84C	101	15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85m² 초과 주택형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주택형	동(라인)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3.04.17	2023.09.18	2024.02.16	2024.07.16	2024.11.18	2025.03.17		
59A	104(1,2) 105(1,2) 106(4,5)	87	2층	5	81,934,345	203,065,655	-	285,000,000	5,000,000	23,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85,500,000
			3층	6	81,934,345	210,065,655	-	292,000,000	5,000,000	24,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87,600,000
			4-5층	12	81,934,345	216,065,655	-	298,000,000	5,000,000	24,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89,400,000
			6-9층	24	81,934,345	225,065,655	-	307,000,000	5,000,000	25,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100,000
			10~18층	40	81,934,345	228,065,655	-	310,000,000	5,000,000	26,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93,000,000
59B	103(5)	15	2층	1	81,995,459	204,004,541	-	286,000,000	5,000,000	23,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85,800,000
			3층	1	81,995,459	210,004,541	-	292,000,000	5,000,000	24,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87,600,000
			4-5층	2	81,995,459	217,004,541	-	299,000,000	5,000,000	24,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89,700,000
			6-9층	4	81,995,459	226,004,541	-	308,000,000	5,000,000	25,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92,400,000
			10~16층	7	81,995,459	229,004,541	-	311,000,000	5,000,000	26,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93,300,000
84A	103(1,2)	83	1층	1	116,125,449	277,874,551	-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2층	2	116,125,449	286,874,551	-	403,000,000	10,000,000	3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3층	2	116,125,449	294,874,551	-	411,000,000	10,000,000	3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4-5층	4	116,125,449	303,874,551	-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6-9층	8	116,125,449	316,874,551	-	433,000,000	10,000,000	3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10~19층	20	116,125,449	321,874,551	-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20층 이상	4	116,125,449	329,874,551	-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109(1,2)	1층	2	116,125,449	268,874,551	-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2층	2	116,125,449	277,874,551	-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3층	2	116,125,449	286,874,551	-	403,000,000	10,000,000	3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4-5층	4	116,125,449	294,874,551	-	411,000,000	10,000,000	3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6-7층	4	116,125,449	303,874,551	-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8~9층	4	116,125,449	308,874,551	-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0~19층	20	116,125,449	321,874,551	-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20층 이상	4	116,125,449	329,874,551	-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84B	101(2,3) 102(2,3) 103(2,3) 106(2,3) 107(3,4)	242	1층	8	116,129,314	267,870,686	-	384,000,000	10,000,000	2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2층	10	116,129,314	276,870,686	-	393,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3층	10	116,129,314	284,870,686	-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4-5층	20	116,129,314	293,870,686	-	410,0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6-9층	40	116,129,314	305,870,686	-	422,000,000	10,000,000	3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10~19층	96	116,129,314	310,870,686	-	427,000,000	10,000,000	3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108(2,3)	242	20층 이상	16	116,129,314	318,870,686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층	2	116,129,314	259,870,686	-	376,000,000	10,000,000	2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2층	2	116,129,314	267,870,686	-	384,000,000	10,000,000	2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3층	2	116,129,314	276,870,686	-	393,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4-5층	4	116,129,314	284,870,686	-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6-7층	4	116,129,314	293,870,686	-	410,0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3,000,000	
			8-9층	4	116,129,314	297,870,686	-	414,000,000	10,000,000	3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10~19층	20	116,129,314	310,870,686	-	427,000,000	10,000,000	3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84C	101(1,4) 102(1,4) 106(1) 107(5)	121	20층 이상	4	116,129,314	318,870,686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층	1	116,157,576	277,842,424	-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2층	4	116,157,576	286,842,424	-	403,000,000	10,000,000	3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3층	6	116,157,576	295,842,424	-	412,000,000	10,000,000	3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4-5층	12	116,157,576	303,842,424	-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6-9층	24	116,157,576	317,842,424	-	434,000,000	10,000,000	3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108(1,4)	121	10~19층	39	116,157,576	321,842,424	-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1층	3	116,157,576	330,842,424	-	447,000,000	10,000,000	3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134,100,000	
			1층	1	116,157,576	268,842,424	-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2층	2	116,157,576	277,842,424	-	394,000,000	10,000,000	2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3층	2	116,157,576	286,842,424	-	403,000,000	10,000,000	3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4-5층	4	116,157,576	295,842,424	-	412,000,000	10,000,000	3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6-7층	4	116,157,576	303,842,424	-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8~9층	4	116,157,576	308,842,424	-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01	107(1,2)	40	10~17층	15	116,157,576	321,842,424	-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1층	2	139,293,048	336,097,229	33,609,723	509,000,000	10,000,000	4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2층	2	139,293,048	346,097,229	34,609,723	520,000,000	10,000,000	4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56,000,000
			3층	2	139,293,048	356,097,229	35,609,723	531,000,000	10,000,000	4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4-5층	4	139,293,048	367,006,320	36,700,632	543,000,000	10,000,000	4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6-9층	8	139,293,048	382,460,866	38,246,086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10~19층	19	139,293,048	387,006,320	38,700,632	565,000,000	10,000,000	4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169,500,000
150	106(3)	4	20층 이상	3	139,293,048	397,915,411	39,791,541	577,000,000	10,000,000	4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173,100,000
	101,102,107(3)		18층	1	205,478,044	622,292,687	62,229,269	890,000,000	10,000,000	7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267,000,000
			최상층	3	205,478,044	628,656,324	62,865,632	897,000,000	10,000,000	7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269,100,000

■ 공통 유의사항

- ①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② 모집공고상에 표기된 면적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함.
- ③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④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 표의 '주택형(전용면적기준)'으로 청약하시기 바람.
- ⑤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⑥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 ⑦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⑧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 대지지분은 연면적비에 따라 배분하였고,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⑩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⑪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⑫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⑬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⑭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신청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⑮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⑯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⑰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 ⑱ 상기 공급금액은 2016.08.12.개정 「주택법」 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익을 제거할 수 없음.)
- ⑲ 발코니 확장 미계약시 계약가능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옥션)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 ⑳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㉑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고 면적 계산상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단수 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㉒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㉓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㉔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㉕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6회차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지연이자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됨.)
- ㉖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㉗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 ㉘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

- 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㉕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 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㉖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㉗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 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음.(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㉘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㉙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봄.
 - ㉚ 더샵 신부센터라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㉛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람. 또한,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더샵 신부센터라' 견본주택(1533-2386)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㉝ 특별공급 공급 배정물량보다 청약 접수건수가 적을 시 미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의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㉞ 각 주택형의 세대별 1차 계약금 납입 이후 2차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일자에 납부하여야 함.
 - ㉟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람.(방문예약제 운영) ※ 코로나19 및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㊱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세대

구분		59A	59B	84A	84B	84C	101	150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3	2	-	-	7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3	2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3	2	-	-	7
	중소기업 근로자	3	-	2	4	3	-	-	12
	장애인	충청남도	2	-	1	8	1	-	-
대전광역시		1	-	1	2	1	-	-	5
세종특별자치시		-	1	1	1	1	-	-	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계		9	1	8	24	12	-	-	5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8	24	12	4	-	48
신혼부부 특별공급		18	3	16	48	24	-	-	10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2	7	4	2	-	16
생애최초 특별공급		18	2	8	24	12	-	-	64

합계	46	6	42	127	64	6	-	291
-----------	-----------	----------	-----------	------------	-----------	----------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2021.11.16.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생애최초) 2021.11.16.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외지역(1년), 수도권 외(6개월), 위촉지역(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p>
	<p>-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style="text-align: right;">-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무주택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p> <p>※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적용되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p>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천안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유의사항

- ①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함.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권장함.
- ②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미비시 접수 불가)
- ③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④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⑥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⑦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접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⑧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⑨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⑩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 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 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
- ⑪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⑫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함.
- ⑭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⑮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⑯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 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 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적용되므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에 의거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됨.)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와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천안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적용되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자녀 5명 이상 미성년자녀 4명 미성년자녀 3명	40 35 3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2)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15 10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5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0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우선 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함.
 -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와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적용되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유의사항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6,208,935원~7,450,721원	7,200,810원~8,640,971원	7,326,073원~8,791,286원	7,779,826원~9,335,790원	8,233,579원~9,880,294원	8,687,332원~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208,935원~8,692,508원	7,200,810원~10,081,133원	7,326,073원~10,256,501원	7,779,826원~10,891,755원	8,233,579원~11,527,009원	8,687,332원~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450,722원~9,934,294원	8,640,972원~11,521,294원	8,791,287원~11,721,715원	9,335,791원~12,447,720원	9,880,295원~13,173,725원	10,424,798원~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 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람.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 건설 지역(천안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적용되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되며, 청약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적용되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람.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봄.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순위 요건

신청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 신청자가 천안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천안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 주택형 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 해당지역 : ①천안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기타지역 :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함.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①천안시 1년 미만 거주자 ②충청남도 ③대전광역시 ④세종특별자치시	전용면적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를 적용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구 분	천안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여부에 따라 분류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이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천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함.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서류 등
①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함.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검색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 체결일
 -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 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 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이며, 주택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① 현재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 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인정되며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내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 방문접수(견본주택)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호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p>•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제외함.)</p>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천안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함.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 ②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함. ③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④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⑥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⑦ 주택소유여부에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⑧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⑪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이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⑫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⑬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⑭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0.24.(월) (청약홈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바일 앱) • 견본주택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 더샵 신부센터라 견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282
일반공급	1순위	2022.10.25.(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2순위	2022.10.26.(수)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5:3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①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③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최하층이라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경쟁 시 ①, 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함. ※ 자격인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함.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서류제출 공통사항

- ①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②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③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발급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④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⑤ 아래의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
- ⑥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경과 이후 파기함.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접수완료하여야 함. 정보취약계층은 건본주택 내 특별공급 청약접수시 제출완료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특별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취급 및 활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기재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전체포함"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서류제출 공통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 상기 '서류제출 공통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로, 출입국기록여부를 "Y"로
	○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설정하여 발급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외국인 직계비속,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출생년도~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까지 출입국 기록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본인/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상기 '서류제출 공통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발급)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상기 '서류제출 공통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배우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가정의 자녀(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중인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신진단서 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중인 경우, 건본주택 비치 (임신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 이상으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만19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임신중인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경우, 견본주택 비치 (임신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해당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 발급)										
	○	직계비속		•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만19세이상)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만19세이상)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표2 참조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자격</th> <th>제출서류</th> <th>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자</td> <td>채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td> <td>해당 직장 세무서</td> </tr> <tr> <td>자영업자</td> <td>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td> <td>세무서</td> </tr> </tbody> </table>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채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채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발급)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 '전체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 직계비속	•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상세" 발급)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가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상세" 발급)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해당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외 제3자 간주	○	위임장	본인(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인 계약 불가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본인(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	신분증 /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표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②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공단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② 세무서/등기소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본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원본) 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법인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②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③ ①,② + 근로자인 경우 - ①,② 해당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② 세무서/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접수장소 ②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상기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사업주체는 서류접수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부수임을 증명하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 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서류[표2]**

해당자격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③,④ 해당직장/세무서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계약체결전 제출완료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자격검증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주택공급 신청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직계 존·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 확인 불가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 부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손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외국인 직계비속,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직계 존·비속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4.)로, 출입국기록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출생년도~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까지 출입국기록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본인 (당첨자)	• 청약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 (당첨자)	• 청약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인 계약 불가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	신분증 / 인장	대리인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접수(당첨자)	계약체결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11.03.(목)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11.04.(금) ~ 2022.11.12.(토) (10:00~16:00), 9일간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서류접수 기간 내 예약방문 접수 - 접수처 : 더샵 신부센터라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82) ※ 기간 내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11.15.(화) ~ 2022.11.17.(목) (10:00~16:00), 3일간 장소 : 더샵 신부센터라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82)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체결 하여야 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시 건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예비입주자의 서류검수,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은 향후 사업주체에서 개별 통보 예정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22.11.03.(목) ~ 2022.11.12.(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 2022.11.0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계약금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인 계약 불가
	○		신분증 / 인장	대리인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위임장	-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문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임.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시어야 함.)
- 계약체결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 사유 등)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됨.
 - ①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함.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 됨.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람.(방문예약제) ※ 코로나19 및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약식)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봄.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차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사전청약을 포함)의 입

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함.**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참고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됨.
 -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1회차 계약금(계약체결시)	우리은행	1005 - 304 - 152487	우리자산신탁(주)	예시: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의 경우 → 10111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의 경우 → 1010201홍길동 (동-호수 7자리 + 계약자명)
	2회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동호수별 가상계좌 부여예정		

- ①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할 수 없음.
- ②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③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④ 1차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 상기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⑤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 ⑥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상기 모계좌(우리은행 1005-304-152487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음.
- ⑦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⑧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⑨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⑩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 하여야 함.
- ⑪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 됨.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①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②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음.
- ③ (중도금이자후불)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④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 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⑤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⑥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⑦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⑧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⑩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단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⑪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
- ⑫ 본 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⑬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⑭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⑮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⑯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⑰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 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⑱ 당 사업지는 비경약과열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2건(기준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⑳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 ㉑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음.
- ㉒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㉓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①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②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③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
- ④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개인정보포함)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⑤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⑥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⑦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 함.
- ⑧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 ⑨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람.
- ⑩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⑪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⑫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을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⑭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⑮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7,000,000	700,000	6,300,000	
59B	8,920,000	892,000	8,028,000	
84A	11,030,000	1,103,000	9,927,000	
84B	8,550,000	855,000	7,695,000	
84C	13,010,000	1,301,000	11,709,000	
101	11,830,000	1,183,000	10,647,000	
150	10,000,000	1,000,000	9,00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 - 604 - 159191	우리자산신탁(주)	예시: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의 경우 → 10111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의 경우 → 1010201홍길동 (동-호수 7자리 + 계약자명)

■ 발코니 확장 및 납부 관련 유의사항

- ①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10.02.18. 개정 시행)

- ③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견본주택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음.
(예시: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의 경우 → 10111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의 경우 → 1010201홍길동)
- ④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님.
- ⑤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⑥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⑦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⑧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음.
- ⑨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⑩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⑪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⑫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⑬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⑭ 발코니 확장 창호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형태, 위치, 규격,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⑮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⑯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⑰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세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⑱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⑲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⑳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㉑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㉒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㉓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㉔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은 입주자 본인이 해야 함.
- ㉕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㉖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㉗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선택1	2대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59A,59B	선택1	2대	거실+침실1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제조사 LG
	선택2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100,000	710,000	710,000	5,680,000	

84A,84B,84C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101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선택2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1,500,000	1,150,000	1,150,000	9,200,000
150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선택2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2,500,000	1,250,000	1,250,000	10,00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 ②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됨.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온은 제공되지 않음.)
- ③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④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 ⑥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됨.
- ⑦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⑧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⑩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⑪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은 임의 사항임.
- ⑫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세대 주방/식당 우물전장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⑬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건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음.
- ⑭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⑮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⑯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⑰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음.
- ⑱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⑲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⑳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㉑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 함.
- ㉒ 84A, 84C타입의 알파룸에는 별도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음.
- ㉓ 150타입의 실외기는 노출 발코니(테라스)의 일부 공간을 구획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테라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㉔ 150타입의 보일러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급수배관의 열선이 적용되어 이에 따른 전기료가 세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2) 가전제품(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및 선택사항	주택형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BI 김치냉장고	삼성	전 타입	BI김치냉장고(RQ22K5L(R)01EC)+냉장고장+тол 수납장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LG						
비스포크	삼성	전 타입	비스포크(냉장/변온/김치)+тол 수납장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오브제	LG	84B, 150	오브제(냉장/냉동/김치)+톨 수납장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인덕션 3구	삼성	전 타입	NZ63B5056AK	※ 84A,84C,101타입 프리미엄키친, 주방평면 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인덕션 옵션이 포함됨.(중복선택 주의)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LG		BEI3GTBI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전기오븐	삼성	전 타입	NQ36A6555CK	※ 비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선택 불가	400,000	40,000	40,000	320,000
	LG		MZ385EBT		450,000	45,000	45,000	360,000
식기세척기	삼성	전 타입 (59A,59B형 제외)	DW60T7075FS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LG		DUB22SB2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음식물 분쇄처리기(지비앤디)		전 타입	GB-200		750,000	75,000	75,000	600,000

■ 가전제품 유의사항

- ①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② 청정환기시스템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임.
- ③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가 설치 됨.
- ④ 청정환기시스템 스탠다드의 경우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가 제공되며, 주방에 4.3인치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 됨.
- ⑤ 청정환기시스템의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⑥ 청정환기시스템은 기본형 환기장치 대비 큰 용량의 제품으로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⑦ 청정환기시스템의 필터교체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 권장해드립니다.
- ⑧ 청정환기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음.
- ⑨ 본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청정환기시스템은 위치가 이동될 수 있음.
- ⑩ 청정환기시스템 프리미엄의 경우 제어 실별로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AIG) 일체형 Color LCD 컨트롤러가 설치되며, 주방에 4.3인치 실내공기질측정(AIG) 일체형 Color LCD 통합 컨트롤러가 설치됨.
- ⑪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또는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도어의 컬러는 준공 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안내를 드릴 예정임. 엘지전자 오브제 선택시 컬러선택은 불가 함.
- ⑫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냉장고 공간이 1개소 제공되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 ⑬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선택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⑭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또는 빌트인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 가능한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도어 및 전기 오븐 설치 위치는 제공되지 않음.
- ⑮ 빌트인 가전(냉장고) 옵션 선택시 톨 수납장과 함께 구성되며 인출형 서랍으로 구성되며. 평형에 따라, 선택하신 가전 브랜드에 따라 톨 수납장 위치, 크기 등이 상이함.
- ⑯ 평면 특성상 오브제는 84B, 150타입만 선택 가능함.
- ⑰ 가구 및 가전 도어 열림 방향은 좌우세대 및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⑱ 빌트인 김치 냉장고 및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오브제) 유상옵션을 선택한 세대만 전기오븐 추가선택이 가능 함.
- ⑲ 빌트인 냉장고(비스포크, 오브제) 또는 빌트인김치냉장고가 설치되는 벽체의 도배, 걸레받이, 바닥 마감 등은 설치되지 않음.
- ⑳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담이도어가 설치 됨. (선택 가능 세대에 한함)
- ㉑ 단위세대 타입에 따라 식기세척기 선택이 불가할 수 있음.
- ㉒ 평면 구성이 변경되는 유상옵션 선택 시 인덕션과 주방후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유상옵션 선택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덕션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한 경우 기본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음.
- ㉓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온수분배기와외 간섭으로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㉔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제품 설치위치와 싱크대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㉕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음식물탈수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싱크대 하부 가림막 길이가 변경 됨.
- ㉖ 음식물 분쇄 처리기 배출구의 배출고무는 성능유지 차원에서 연 1회 교환하여야 함. 제품별 소모성 교환 품목은 선택 전 확인하시기 바람.
- ㉗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84A, 84C, 101타입은 주방 평면 변화로 인한 가스배관 연장 시공이 불가하여 인덕션이 유상옵션에 포함됨.
- ㉘ 150타입의 기본형/청정환기유니트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시공상황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㉙ 84A, 84C, 101타입 프리미엄 키친,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옵션시 가스배관은 주방벽면에 별도 시공되며 인덕션 위치에는 가스쿡탑을 설치할 수 없음. 가스쿡탑 설치를 원하는 경우 주방벽면 가스배관 설치부위에 입주자가 가스쿡탑을 직접 설치 하셔야 하며, 가스쿡탑 설치를 위해 입주자의 가구 및 상판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㉔ 식기세척기 브랜드에 따라 걸레받이 설치부위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3)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59A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설비	청정환기 시스템 스탠다드 형	청정환기 유니트, 메인컨트롤러(1E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프리미엄 형	청정환기 유니트, 메인컨트롤러(1EA), 각실 컨트롤러(3EA)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평면	프리미엄 바스(공용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프리미엄 바스(부부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샤워부스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프리미엄 키친 A	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디자인 후드+ 추가 수납 상/하부장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프리미엄 키친 B	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디자인 후드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가구 및 마감재	현관중문 + 신발장 하부조명	3연동 슬라이딩 도어+신발장 하부조명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안방 불박이장 스탠다드 형(침실1)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안방 불박이장 프리미엄 형(침실1)	유리 슬라이딩도어 + 고급 시스템가구(선반조명)+벽판넬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자녀방 불박이장(침실2)	불박이장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키즈 드림 클로젯(침실2)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가구 (옷장, 책장, 벤치 등)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자녀방 슬라이딩장(침실3)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디자인월 (프리미엄 키친 A 선택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벽판넬+픽처레일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디자인월 (기본주방, 프리미엄 키친 B 선택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엔지니어드스톤 기본주방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2,250,000	225,000	225,000	1,800,000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키친 A선택시)		3,550,000	355,000	355,000	2,840,000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키친 B선택시)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바닥타일	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포슬린타일 600*6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감성조명(거실+침실1+침실2+침실3)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전통커튼	전통커튼레일(거실, 침실1 각 1개소), 월패드 연동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 59B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설비	청정환기 시스템 스탠다드 형	청정환기 유니트, 메인컨트롤러(1E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프리미엄 형	청정환기 유니트, 메인컨트롤러(1EA), 각실 컨트롤러(3EA)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평면	프리미엄 바스 (공용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프리미엄 바스 (부부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샤워부스	3,250,000	325,000	325,000	2,600,000	
	프리미엄 키친 A	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디자인 후드+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추가 수납 상/하부장					
가구 및 마감재	프리미엄 키친 B	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디자인 후드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현관중문 + 신발장 하부조명	3연동 슬라이딩 도어+신발장 하부조명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안방 불박이장 스탠다드 형 (침실1)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안방 불박이장 프리미엄 형 (침실1)	유리 슬라이딩도어+고급 시스템가구(선반조명)+벽판넬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자녀방 불박이장 (침실2)	불박이장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키즈 드림 클로젯 (침실2)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가구 (옷장, 책장, 벤치 등)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자녀방 슬라이딩장 (침실3)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2,850,000	285,000	285,000	2,280,000	
	디자인월 (프리미엄 키친 A 선택 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픽처레일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디자인월 (기본주방, 프리미엄 키친 B 선택 시)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거실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 판넬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엔지니어드스톤 기본주방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키친 A 선택 시)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키친 B 선택 시)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바닥타일	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침실2,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포슬린타일 600*6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감성조명(거실+침실1+침실2+침실3)	1,750,000	175,000	175,000	1,400,000		
전통커튼	전통커튼레일(거실, 침실1 각 1개소), 월패드 연동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 84A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설비	청정환기 시스템 스탠다드 형	청정환기 유니트, 메인컨트롤러(1E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프리미엄 형	청정환기 유니트, 메인컨트롤러(1EA), 각실 컨트롤러(3EA)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평면	프리미엄 바스(공용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프리미엄 바스(부부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샤워부스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대면형 주방+주방 우물천정(간접조명) (알파룸활용주방배치변경+팬트리+장식장+인덕션+디자인후드+주방수납구동방식변경및고급디자인가구)	8,700,000	870,000	870,000	6,960,000	
	프리미엄 키친	대면형주방+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인덕션+디자인 후드+벽판넬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가구 및 마감재	현관중문 + 신발장 하부조명	3연동 슬라이딩 도어+신발장 하부조명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안방 불박이장 스탠다드 형(침실1)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안방 불박이장 프리미엄 형(침실1)	유리 슬라이딩도어+고급 시스템가구(선반조명)+벽판넬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자녀방 불박이장(침실2)	불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자녀방 불박이장(침실3)	불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키즈 드림 클로젯(침실3)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가구 (옷장, 책장, 벤치 등)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손 세탁볼 + 하부장	손 세탁볼 하부장	400,000	40,000	40,000	320,000	
디자인월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픽처레일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엔지니어드 스톤 기본주방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3,650,000	365,000	365,000	2,920,000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선택 시)		3,550,000	355,000	355,000	2,840,000	
엔지니어드 스톤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바닥타일	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포슬린타일 600*600
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바닥타일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1,570,000	157,000	157,000	1,256,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감성조명(거실+침실1+침실2+침실3)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전통커튼	전통커튼레일(거실, 침실1 각 1개소), 월패드 연동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 84B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설비	청정환기 시스템 스탠다드 형	청정환기 유닛, 메인컨트롤러(1E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프리미엄 형	청정환기 유닛, 메인컨트롤러(1EA), 각실 컨트롤러(3EA)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평면	프리미엄 바스(공용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프리미엄 바스(부부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샤워부스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프리미엄 키친	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디자인 후드+장식장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가구 및 마감재	현관중문 + 신발장 하부조명	3연동 슬라이딩 도어+신발장 하부조명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안방 불박이장 스탠다드 형(침실1)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안방 불박이장 프리미엄 형(침실1)	유리 슬라이딩도어 + 고급 시스템가구(선반조명)+벽판넬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자녀방 불박이장(침실2)	불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자녀방 불박이장(침실3)	불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키즈 드림 클로젯 (침실3)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가구 (옷장, 책장, 벤치 등)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디자인월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픽처레일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엔지니어드 스톤 기본주방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3,650,000	365,000	365,000	2,920,000	
	엔지니어드 스톤 (프리미엄 키친 선택 시)		3,850,000	385,000	385,000	3,080,000	
	바닥타일	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침실2,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0,700,000	1,070,000	1,070,000	8,560,000	포슬린타일 600*6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감성조명(거실+침실1+침실2+침실3)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전통커튼	전통커튼레일(거실, 침실1 각 1개소), 월패드 연동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 84C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설비	청정환기 시스템 스탠다드 형	청정환기 유닛, 메인컨트롤러(1E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프리미엄 형	청정환기 유닛, 메인컨트롤러(1EA), 각실 컨트롤러(3EA)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평면	프리미엄 바스(공용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 + 고급 수전/도기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프리미엄 바스(부부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 + 고급 수전/도기/샤워부스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대면형 주방 + 주방 우물천정(간접조명) (알파룸 활용주방 배치변경+팬트리+장식장+인덕션+디자인후드+주방수납 구동방식변경 및 고급 디자인가구)	8,700,000	870,000	870,000	6,960,000		
	프리미엄 키친	대면형주방+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인덕션+디자인 후드+벽판넬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가구 및 마감재	현관중문 + 신발장 하부조명	3연동 슬라이딩 도어+신발장 하부조명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안방 불박이장 스탠다드 형 (침실1)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안방 불박이장 프리미엄 형 (침실1)	유리 슬라이딩도어+고급 시스템가구(선반조명)+벽판넬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자녀방 불박이장 (침실2)	불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자녀방 불박이장 (침실3)	불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키즈 드림 클로젯 (침실3)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가구 (옷장, 책장, 벤치 등)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손 세탁볼 + 하부장	손 세탁볼 하부장	400,000	40,000	40,000	320,000		
	디자인월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x1200)+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픽처레일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엔지니어드 스톤 기본주방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3,650,000	365,000	365,000	2,920,000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3,550,000	355,000	355,000	2,840,000		
	엔지니어드 스톤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바닥타일		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포슬린타일 600*600
	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바닥타일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1,570,000	157,000	157,000	1,256,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2,700,000	1,270,000	1,270,000	10,16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12,800,000	1,280,000	1,280,000	10,24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감성조명 (거실+침실1+침실2+침실3)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전통커튼	전통커튼레일(거실, 침실1 각 1개소), 월패드 연동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 101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설비	청정환기 시스템 스탠다드 형	청정환기 유니트, 메인컨트롤러(1E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프리미엄 형	청정환기 유니트, 메인컨트롤러(1EA), 각실 컨트롤러(3EA)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평면	프리미엄 바스(부부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샤워부스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스타일링 바스	건식세면대 및 수납장+고급 수전+고급 세면기+바닥타일+락판넬	4,150,000	415,000	415,000	3,320,000	※ 케어룸과 중복 선택 불가
	케어룸	케어룸 하부장+톨 수납장+고급 수전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스타일링바스와 중복 선택 불가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바이오필릭 테라스+주방 우물천정(간접조명) (침실4 활용 대면형 주방+폴딩도어+슬라이딩도어+바닥/벽 디자인 타일(지정구간)+인덕션+디자인 후드+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	13,000,000	1,300,000	1,300,000	10,400,000	
	프리미엄 키친	대면형 주방+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 +인덕션+디자인 후드+벽판넬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 아일랜드 및 냉장고장 위치 변경
가구 및 마감재	현관중문 + 신발장 하부조명	포켓형 2연동 슬라이딩 도어+신발장 하부조명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안방 불박이장 스탠다드 형 (침실1)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안방 불박이장 프리미엄 형 (침실1)	유리 슬라이딩도어+고급 시스템가구(선반조명)+벽판넬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자녀방 불박이장 (침실2)	불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자녀방 불박이장 (침실3)	불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키즈 드림 클로젯 (침실3)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가구 (옷장, 책장, 벤치 등)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손 세탁볼 + 하부장	손 세탁볼 하부장	400,000	40,000	40,000	320,000	
	디자인월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픽처레일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엔지니어드스톤 기본주방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바닥타일	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포슬린타일 600*600
	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바닥타일	2,030,000		203,000	203,000	1,624,000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원목마루+바닥타일		14,000,000	1,400,000	1,400,000	11,20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4,500,000	1,450,000	1,450,000	11,600,000	
	원목마루+바닥타일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시)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2,300,000	1,230,000	1,230,000	9,840,0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감성조명(거실+침실1+침실2+침실3)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전통커튼	전통커튼레일(거실, 침실1 각 1개소), 월패드 연동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 150형

구분	품목 및 선택사항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증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7	입주지정일	
설비	청정환기 시스템 스탠다드 형	청정환기 유닛, 메인컨트롤러(1EA)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경동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프리미엄 형	청정환기 유닛, 메인컨트롤러(1EA), 각실 컨트롤러(3EA)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평면	프리미엄 바스(부부욕실)	벽/바닥 포슬린타일 (벽 600*600, 바닥 300*300)+고급 수전/도기/샤워부스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스타일링 바스	건식세면대 및 수납장+고급 수전+고급 세면기+바닥타일+락판넬	4,150,000	415,000	415,000	3,320,000	※ 케어룸과 중복 선택 불가
	케어룸	케어룸 하부장+톨 수납장+고급 수전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스타일링 바스와 중복 선택 불가
가구 및 마감재	프리미엄 키친	주방수납 구동방식 변경 및 고급 디자인 가구+디자인 후드+장식장	10,900,000	1,090,000	1,090,000	8,720,000	
	현관중문 + 신발장 하부조명	3연동 슬라이딩 도어+신발장 하부조명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자녀방 불박이장(침실3)	불박이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유리 슬라이딩 도어	침실 4 유리슬라이딩 도어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손 세탁볼 + 하부장	손 세탁볼 하부장	400,000	40,000	40,000	320,000	
	디자인월	거실 아트월 대형 외산타일(600×1200)+아트월 간접조명+복도/거실 디자인 벽판넬+픽처레일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엔지니어드 스톤 기본주방	주방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엔지니어드 스톤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바닥타일	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포슬린타일 600*600
원목마루+바닥타일	유럽산 원목마루(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포슬린타일(복도+거실+주방)	15,700,000	1,570,000	1,570,000	12,560,000	포슬린타일 600*6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감성조명(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 설비, 평면, 가구 및 마감재 유의사항

- ①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②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의 스타일링바스 유상옵션은, 건립세대와 형태 및 크기 구성 등이 상이하니, 견본주택 및 분양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
- ③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세면대 배수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천정에 설치 됨. 또한 스타일링 바스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의 나누기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④ 스타일링바스 또는 케어룸 선택 여부에 따라 욕실 사이즈, 욕실장의 형태와 구성, 양변기 위치, 욕실 약세사리 설치품목, 욕실문 및 세면대의 형태, 바닥마감재가 상이할 수 있음
- ⑤ 바닥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스타일링바스 구역의 바닥 타일은 선택하신 유상옵션 바닥타일과 동일하게 설치됨. 바닥타일 유상옵션 미선택 시 지정 타일 마감으로 시공됨. 케어룸의 기본 바닥 마감은 강마루이며 바닥타일 유상옵션 선택시 선택하신 유상옵션 바닥타일과 동일하게 설치됨.

- ⑥ 스타일링 바스 공간 바닥에는 별도의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⑦ 스타일링바스 선택시 스타일링바스와 복도 공간 사이 도어는 포켓도어로 시공됨. 케어룸 선택시 케어룸과 복도공간 사이 도어는 목창호 여닫이도어가 시공됨. 스타일링바스와 케어룸 미선택 시 욕실 전실공간과 복도 사이에는 목창호 여닫이 도어가 설치됨.
- ⑧ 프리미엄 바스 선택 시 고급 타일, 도기, 수전, 뒷선반, 샤워부스가 설치된 프리미엄 바스로 시공 됨. 프리미엄 바스 미선택 시 제공되는 기본형 마감재는 견본주택 전시내용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람.
- ⑨ 프리미엄 바스 유상옵션은 선택하시는 욕실에 따라 구성 내용이 상이하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
- ⑩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은 알파룸(84A, 84C)과 침실4(101)를 활용한 유상옵션임.
- ⑪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선택 시, 84A, 84C, 101 타입의 주방 평면 변화로 인한 가스배관 연장 시공이 불가하여 인덕션이 유상 옵션에 포함됨.
- ⑫ 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선택 시, 84A, 84C, 101 타입의 주방 평면 변화로 인한 가스배관 연장 시공이 불가하여 인덕션이 유상옵션에 포함됨.
- ⑬ 101타입의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바이오필릭테라스는 폴딩도어와 슬라이딩도어, 타일 벽/바닥 마감이 적용되는 실내 공간이며, 바이오필릭테라스 바닥에는 별도의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⑭ 101타입의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바이오필릭테라스에 시공되는 벽 타일은 우드타일 임. 우드타일은, 자재 특성상 벤딩(표면 휘어짐)이 있어 벽면이 평활하지 않으며, 타일 이음매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⑮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미선택시 침실4 벽면은 벽지,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됨.
- ⑯ 유상옵션 선택 유무 및 유상옵션 조합에 따라 각 타입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⑰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을 선택하신 세대에서만 주방 우물천정 및 간접조명이 시공됨.(150타입 제외)
- ⑱ 150타입은 프리미엄키친 선택시 간접조명이 주방 우물천정에 시공됨.
- ⑲ 59A, 59B, 84B, 150 타입의 프리미엄 키친 미선택 시 침니형 후드(기본형)가 설치되며, 기본형 주방가구가 설치됨.
- ⑳ 84A, 84C, 101 타입의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평면 및 기본형 주방기구로 설치되며 기본 가스쿡탑과 침니형후드(기본형)가 설치 됨.
- ㉑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및 프리미엄 키친 유상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 구동방식, 하부장 열림방식(서랍유/무), 약세서리, 수납장 내부에 설치된 하드웨어(힌지/서랍재 등 부자재), 수납장 구성 등이 변경됨.
- ㉒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및 프리미엄 키친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 약세서리가 상이함. 주방 유상옵션 미선택시 일반 약세서리로 설치됨.
- ㉓ 주방평면특화-프리미엄 키친 및 프리미엄 키친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주방/식당 등기구 개수 및 위치가 변경됨.
- ㉔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㉕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㉖ 본공사 시 가구 선반 처짐 등을 고려하여 보강목이 시공될 수 있음.
- ㉗ 101타입 드레스룸 도어 마감은 유리도어로 시공되며 그 외 타입은 도장 도어로 시공 됨.
- ㉘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재 특성상 시공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 됨.
- ㉙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MMA) 주방상판과 주방벽체 타일마감이 적용되며 상판과 타일이 접하는 부분에는 뒷턱이 설치됨. 기본형/유상옵션형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상판 전면 두께(다용도실 가구 상판 참조)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됨.
- ㉚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 부위가 상이함.
- ㉛ 중문(현관중문, 거실/복도 유리슬라이딩도어)은 설치 주대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 시스템선반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현관중문 선택 시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이 적용되며,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ON/OFF를 위한 동작감지센서가 천장에 설치됨.)
- ㉜ 중문(현관중문, 거실/복도 유리슬라이딩도어)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음.
- ㉝ 원목마루+바닥타일 유상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웅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및 무늬,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음.
- ㉞ 바닥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복도/주방에 시공되는 바닥 포슬린 타일은 자재 특성상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타일 패턴 및 칼라는 생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무늬나 색상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는 K.S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타일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㉟ 주방 장식장의 가구 내부 및 오픈장 부위에 전열기기 설치 및 사용 시 가구에 변형이 생길 수 있음.
- ㊱ 디자인 월 유상옵션 미선택시, 아트월은 거실 전면부위에만 400X800 포슬린타일로 설치되며, 타일 장방향이 가로로 설치됨, 또한 거실 후면 및 복도는 지정된 거실 벽지로 마감되며, 아트월 상부 간접조명(등박스 포함), 픽처레일은 시공되지 않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
- ㊲ 디자인 월 유상옵션의 벽판넬 천정 부위에 픽처레일이 시공됨
- ㊳ 디자인월은 평형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㊴ 자녀방 불박이장, 키즈드림패키지, 안방 불박이장 등 가구 옵션은 평형에 따라 길이, 크기, 위치, 마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㊵ 바닥타일 및 원목마루 유상옵션을 선택한 세대에서 스타일링바스 또는 케어룸 유상옵션 선택 시, 스타일링바스 / 케어룸 공간의 바닥은 유상옵션으로 선택된 타일 마감으로 시공됨.

- ㉔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바닥타일 설치 부위가 상이함.
- ㉕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등,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정에 간접 LED조명(점소등 제어)이 적용됨. (알파룸 및 일부침실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계약안내문 참조)
- ㉖ 거실감성조명은 월패드, 침실감성조명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및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함. (단,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㉗ 거실, 주방 아트월면 상부 LED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과는 별도 옵션임.
- ㉘ 전동커튼 유상옵션 선택 시 커튼구동기, 커튼레일, 리모컨이 제공되며, 커튼지는 제공되지 않음.
- ㉙ 현관중문 유상옵션 미선택 시 신발장 하부에 간접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 내외부 형태 및 크기들이 변경되고 신발장 측면에는 가구마감을 위한 벽체가 시공됨.

■ 홈스타일초이스(무상옵션)

항목	기본형	선택형	비고	
안방 드레스룸	84B	파우더형 드레스룸	올인원 드레스룸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 ①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품질, 품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② 선택형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③ 올인원 드레스룸과 파우더형 드레스룸 선택시 욕실도어의 방향과 위치는 상이함.
- ④ 올인원 드레스룸 도어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도장 도어로 설치되며 파우더형 선택시에도 같은 마감으로 시공됨.
- ⑤ 홈스타일 초이스를 미선택한 경우 기본형(파우더형)으로 설치되며, 추후 변경하실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 - 604 - 406132	(주)포스코건설	예시: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의 경우 → 10111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의 경우 → 1010201홍길동 (동-호수 7자리 + 계약자명)

- ①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계약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는 수납하실 수 없음.)
- ④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0201홍길동)
- ⑤ 추가 선택품목 약정금액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안내를 드리지 않음.
- ⑥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음.
- ⑦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님. 또한, 추가 선택 품목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⑧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관련 공통 유의사항

- ①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음.
- ③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④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⑤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⑥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 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분양서류,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⑦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공급하는 사항임.(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 과 별개 사항임.)

- ⑧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⑨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⑩ 시공 상의 문제로 사업주체가 별도로 통지하는 계약체결 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⑪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⑫ 상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⑬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귀속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⑭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1) 공통사항

- 「주택법」제54조 제1항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임.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 선택품목 선택 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문	목재문(문틀,문선,문짝,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세대 PL창호, 현관 방화문,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금속도어 루버창 및 도어록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슈트 및 벽패널류 등), 발코니(다용도실, 실외기실 포함) 벽 도장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콘센트 및 스위치의 배관 배선
	천정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거실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재료분리대, 샤워부스, 욕실악세사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욕실딛선반	방수(바닥, 벽체)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인조대리석 상판 포함) 일체,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주방가전 일체 등	설비배관, 전기/통신배관 및 배선, 자동식소화기(자재만 제공), 가스차단기, 주방 배기덕트
	조명 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 일체, 욕실매입 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현관등, 복도등)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현관창고(기본해당세대에 한함), 드레스룸(드레스룸 도어, 파우더장 포함), 복도 장(기본해당세대에 한함), 수전	각종 슬리브, 월패드, 에어컨냉매배관, 소화기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m², 원, 85m² 초과 주택형은 VAT 포함]

구분	59A	59B	84A	84B	84C	101	150
----	-----	-----	-----	-----	-----	-----	-----

금액	20,020,000	20,820,000	30,740,000	29,260,000	30,020,000	38,400,000	60,840,000
----	------------	------------	------------	------------	------------	------------	------------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①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으로는 선택하실 수 없음.)
- ②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③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을 신청할 수 없음.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을 변경하실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람.)
- ④ 상기 금액 중 전용 85㎡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⑤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함.
- ⑥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⑦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⑧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⑨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 함.
- ⑩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⑪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호를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⑫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각종 설비배관은 옵션 미선택 세대를 기준으로 시공됨.
- ⑭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람.
- ⑮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⑯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⑰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람.
- ⑱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⑲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⑳ 사업주체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음.
- ㉑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㉒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랜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랜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㉓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약서를 작성해야 함.
- ㉔ 마이너스 옵션 선택 후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㉕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㉖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㉗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고, 실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 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5년 6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 드릴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 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함.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 됨.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함.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VIII 설계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구 분	내 용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2.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람. 3.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4.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5.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임. 6. 단지 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 함. 7.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8.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9.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10.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11.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13.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14.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16.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17.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음. 18.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인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2.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3. 당 사업은 [2020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8.09.01)]' 에 따라 적용됨. 4.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음. 5.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6.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7.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8.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 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분양홍보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2.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3.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4.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5.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6.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견본주택 내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함. 7.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8.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9.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인허가 과정이나 분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10.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됨.
견본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견본주택에는 59A, 84B, 101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2. 미건립 주택형 59B, 84A, 84C, 150타입은 견본주택에 모형으로 전시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치수 및 마감재 색상, 설치 제품의 크기,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3.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59A, 84B, 101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59B, 84A, 84C, 150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음. 4.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5.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6.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과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7.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 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9.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0.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1.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12. 견본주택 내 안방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 수구 및 타일마감(실외기실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 됨.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합문이 설치 됨. 13.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14.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5.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16.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17.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8.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19.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20.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포장, 환기구(DA),천창(탑라이트),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21.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22.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23.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24.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25.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음. (가스식 설치 불가) ※ 건조기는 전기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음. 26.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27.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8.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 시 상이할 수 있음. 29.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본형 주방과 욕실은 프리미엄 키친 및 프리미엄 바스 미션택시 설치되는 가구마감재, 후드 등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실제 설치되는 주방 및 욕실의 형태와 상이함. 30.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음. 31. 견본주택에 설치된 문틀 부위는 본 공사시 시공 여건에 따라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음.
입지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2.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3.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4.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5.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등)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6. 단지 외부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변경이나 인허가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 될 수 있음. 7.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도로 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8.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면경사/단차구조물(옹벽 등)이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p>9.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등이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p> <p>10.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람.</p>
학교관련 유의사항	<p>1. 본 아파트 입주인 초등학생은 해당 통학구역인 천안신부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임. 단, 교육청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2. 본 아파트 입주인 중학생은 천안1학군 동부구역 중학교에 배치할 예정임. 단, 향후 학생배치 여건변화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3. 본 아파트 학생배치계획은 사업계획 변경, 인근 개발사업 추이 및 급당 인원 하향 조정등의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따라 교육청과의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p> <p>4. 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p> <p>5. 본 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예정이며 본 아파트 사업대상지에서 천안신부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 안전 확보방안을 교육청 및 천안시청과 협의하여 마련 예정임.</p>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p>1.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함.</p> <p>2. 조감도, 단위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다.</p> <p>3.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정인 규정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p> <p>4.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p> <p>5.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p> <p>6.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p> <p>7.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p> <p>8.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p> <p>9.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p> <p>10.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함.</p> <p>11.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p> <p>12.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음.</p> <p>13.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p> <p>14. 101,102,103,104,105,107동 하부에 자전거보관대가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또한, 101동 1층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 106동 1층에 게스트하우스, 106동 하부에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주민운동시설, 107동 하부에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p> <p>15.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p> <p>16.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입주인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7.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p> <p>18.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타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19.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p> <p>20.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는 8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동은 2개소가 병렬배치될 수 있음.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21.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및 옥상구조물 설치 부위 주</p>

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22.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입체적 단지 조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23.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임.
24.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25.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
26. 단지 내부와 외부는 레벨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조경석, 석축 등이 설치될수 있고,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7. 옹벽 및 석축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28.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해 변경하지 않음.
29.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30. 조경 공간 및 필로티 내에 D/A (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어 보행 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31. 단지 내 수경 시설이 설치 되며 입주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해충 및 미생물의 발생, 개구리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32. 단지 내 조경 공간 및 조경 시설물 내 취사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함.
33. 단지 내 옥외공간 (물놀이터, 수경시설, 텃밭 등) 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
34.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및 외부휴게시설과 조경공간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설치예정 위치를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35.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티하우스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 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음.
36. 단지 배치도 상의 조경공간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공사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7.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여야 함.
38. 단지외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9.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40.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및 소방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41.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42.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함.
43.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44.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216g임.
45.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6.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7.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뿔질,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 됨.
48.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9.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0.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축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1.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2.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3.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54. 본 아파트 축벽 로고의 형태, 크기,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55.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6.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57. 103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하여 있으므로, 저층세대는 계약 전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58. 본 단지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에 726대로 구성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2대로 별도 계획 됨.
59.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급속 16대, 완속 14대, 총 30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60. 본 단지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01동과 102동 사이 및 105동과 106동 사이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출입구는 102동과 103동 사이에 위치하여,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61.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

	<p>하여 확인하시기 바람.</p> <p>62. 지하 1층의 주차장 주출입구 높이는 3.0M로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 2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함.</p> <p>63. 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음.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 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람.</p> <p>64.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p> <p>65.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음.</p> <p>66.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p> <p>67.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p> <p>68.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p> <p>69.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p> <p>70.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음.</p> <p>71.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음.</p> <p>72.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p> <p>73.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음.</p> <p>74.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p> <p>75. 우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p> <p>76. 단지 내 각 동은 건축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배치되었으나, 단지의 총 세대에 대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 수인한도는 75.17%로 101,102,106,108동 등 일부 동의 저층 세대는 향 및 계절에 따라 일조량이 감소할 수 있음.</p>
단위세대 및 마감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59B,84A,84C,150 타입은 건립세대인 59A, 84B, 101 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오픈선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 아파트 기준층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대피공간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3.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함. 4.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유상오픈선[시스템 에어컨 등]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 됨. 5.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함. 6.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7.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8.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함.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시기 바람. 9.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10.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11.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며,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보안 기능이 있어 개폐시 해당세대와 하부세대에 경보 및 월패드에 연동되며 하부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음. 12.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150타입은 하향식 피난구 대신 대피공간이 설치됨. 13.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4.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함. 15.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가로 90cm, 세로 90cm 규격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함. 150타입은 다용도실 천장에 환기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천장마감 및 점검구 설치로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전제품의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16. 59A타입은 호실별 주방창호 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분양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17.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8.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9.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20.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 됨. 21.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 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22.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23.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4.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5.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26.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27.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28.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음.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음.
29.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30. 엔지니어드 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공사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1.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32.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과 무관함.
33. 본공사 시 문선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 여건에 따라 이음부(줄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과 무관함.
34.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35.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6.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37.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등은 달라질 수 있음.
38.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39.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 될 수 있음.
40.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1.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2.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43.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44.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45.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됨.
46.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
47.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48.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9. 세대의 기본제공 품목의 가전,마감자재 등은 제품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50. 세대의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별도 마감이 되지 않음. (벽돌,콘크리트 마감)
51. 주방벽 및 욕실 바닥/벽, 발코니 바닥타일은 입주자 동의 없이 시공줄눈 위치변경 가능함. (재료 및 크기는 동일)
52.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옵션[홀스타일 초이스 - 안방 드레스룸 선택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 됨.
53. 보조주방의 구조에 따라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설치 시 보조주방 창호 개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제기는 불가하므로, 가전제품 설치 전 세대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창호】

1.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3.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음.
5. 단위실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p>6. 각 세대 거실 및 안방 발코니와 101타입 침실4 및 150타입 식당 외부창호는 철제난간이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p> <p>7.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8.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9.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p>
<p>공용 및 세대 기계전기설비</p>	<p>1.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부지 내·외부 유출입구 등)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p> <p>2.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우수처리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p> <p>3. 단지 내 조정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상 구조물(환기/제연용 DA, 탐라이트, 발전기 연도, 천창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인근 호실에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크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4.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p> <p>5.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p> <p>6. 승강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음.</p> <p>7. 승강기의 속도, 인승, 설치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함.</p> <p>8.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p> <p>9.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 주요 방법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p> <p>11.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격리,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p> <p>12.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리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음.</p> <p>1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106, 107, 109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p> <p>14.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106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p> <p>15.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16. 단지내 태양광 발전설비는 및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 될 예정 이며, 배치 및 용량은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p> <p>17.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p> <p>18.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p> <p>19.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p> <p>20. 「소방내진 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p> <p>21. PD, AD 등 샤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음.</p> <p>22.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음.</p> <p>23.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 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24.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25.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대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26.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음.</p> <p>27. 환기장치 및 옥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28. 청정환기유닛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환기장치에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연2회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p> <p>29.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ϕ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제품 선정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p> <p>30. 거실, 침실에 적용되는 냉매배관은 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커버가 시공됨.</p> <p>31.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 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p> <p>32. 실외기 설치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p> <p>33.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p>

34. 실외기실 그릴창의 손잡이의 방향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35. 각 주택형별 실외기실 공간 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 사용 예정인 실외기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 설치에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람.
36.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외기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함.
37.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도 없어야 함.
38.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 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39. 기본형 환기장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 스위치 상부에 설치 예정이며, 본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0. 기본형 환기장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1. 기본형 환기장치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42. 기본형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됨.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튼박스 길이 및 폭이 변경될 수 있음)
43.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인근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됨.
44.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난방 배관의 환수측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45.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됨.
46.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47.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됨.
48. 본 공사 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9.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 탈수기가 옵션에 따른 추가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음.
50.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51.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52.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천장내부에 설치된 점검구와 자동식소화기 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음.
53. 렌지후드 주변 천장에 덕트연결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음.
54. 렌지후드 작동 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55.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56. 배수 드레인, 선풍통, 각종 배관 등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구 수량이 추가되거나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57.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58. 다용도실 천장,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환기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59. 본 공사 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0. 본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 하여 침실 내부(시아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61. 동체 감지기는 1, 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음.
62. 호실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함.
63.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64.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
65. 월패드외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 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66. 호실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67.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시공됨.
68.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69.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70.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71.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가스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음.
72. 인.허가 조건에 따라 대피공간에는 3~10층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규격 및 재질 등은 법적 기준에 따름.
73.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스위치, 콘센트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p>74.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75.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p> <p>76.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최하층 세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급탕 분배기는 당해 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2개의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음.)</p> <p>77. 세대 내 난방온수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음.</p> <p>78.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p> <p>79.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음.</p> <p>80.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에 환기장치나 연결덕트, 기타 환기덕트, 상부층 배수관 등은 부득이 천장에 노출 설치 됨.</p> <p>81. 가변형 벽체 여부 및 유상읍선 선택에 따라 난방제어구획, 스프링클러 헤드와 환기 디퓨저의 배치와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82.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시기 바람.</p> <p>83.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p> <p>84.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p> <p>85.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월패드/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이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p> <p>86. 세대분전반 및 단자함의 위치는 침실 내부이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p> <p>87.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임.</p> <p>88. 침실1(안방)발코니에 전동 빨래 건조대(리모컨 타입, 조명 일체형)가 설치 되며, 별도의 발코니 조명은 설치 되지 않음.</p> <p>89. 최상층 세대 및 펜트하우스 하부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음.</p> <p>90.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p> <p>91.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사이즈 및 헤드 기준값수 등 소화설비 시설물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p>
스마트홈 서비스	<p>1.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 함.(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 함.)</p> <p>2.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 열림은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능함.</p> <p>3.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 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p> <p>4.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음.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여부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음.</p> <p>5.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음.</p> <p>6. 음성인식 스피커는 미제공되며, 카카오, SKT, 삼성전자, KT 의 음성인식기기와 연동하기 위한 플랫폼이 제공됨.</p> <p>7.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건설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건설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kakao i 연동 스피커,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 계정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톡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함.</p> <p>8. kakao i 연동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 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p> <p>9. 헤이카카오, 카카오톡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기능(조명제어 등),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중 기기(Kakaomini)연동은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p> <p>10. 카카오톡 앱, 헤이카카오 앱 음성제어 및 카카오톡 챗봇의 세대 기기제어와 정보확인 서비스 제공범위는 서로 상이할 수 있음.</p> <p>11. 헤이 카카오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씨,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의 카카오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편의서비스는 카카오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카카오임.</p> <p>12.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 함.</p> <p>【삼성전자】</p> <p>1.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p> <p>2. 옵션 제품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의 종류(9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p>

	<p>공기 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p> <p>3.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에서 확인 가능함.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함.</p> <p>4.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유상 전환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름.</p>
	<p>[SK연동]</p> <p>1. SKT NUGU Smart Home NUGU . 및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하여 세대 기기 제어 및 세대 정보 확인이 가능 함.</p> <p>2. 더샵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됨. 이 후 서비스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p> <p>3. SKT 스마트홈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 함.</p> <p>4.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중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p> <p>5.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자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방송TTS와 같은 부가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p> <p>6.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사용환경은 SKT SmartHome 홈페이지(www.sktsmarthome.com)에서 확인 가능함.</p>
	<p>[LG전자]</p> <p>1.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LG ThinQ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p> <p>2. 옵션 제품품목 이외 입주인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LG전자 생활가전 제품(8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LG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p> <p>3.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환경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 에서 확인 가능함.</p> <p>4. 세대별 LG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 IoT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유상 전환 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름.</p>
	<p>[KT 연동]</p> <p>1. 더샵클라우드와 연동되어 KT 기가지니 홈IoT, 기가지니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됨. 이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사들과 논의/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임.</p> <p>2. KT 기가지니 홈 IoT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 함. KT 기가지니 홈IoT, 기가지니 음성인식서비스 중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p> <p>3. KT 기가지니 홈, 기가지니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자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p> <p>4. KT 기가지니 홈, 기가지니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환경은 KT 기가지니 홈페이지(https://gigagenie.kt.com/main.do)에서 확인 가능 함.</p>
부대복리시설	<p>1. 주민공동시설은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1개소, 실내골프연습장 1개소 등),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됨.</p> <p>2.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p> <p>3.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음.</p> <p>4.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음.</p> <p>5.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음.</p> <p>6.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p> <p>7.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자를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p> <p>8.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 됨.</p> <p>9. 단지 내 설치 된 물놀이터, 석가산 등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자의 책임임.</p>

10. 시공사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IX 기타사항 안내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구분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초치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초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p>	 <p>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감리회사	감리금액(원)	비 고
건축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 1,876,558,200	
구조	(주)밀레니엄구조	₩ 132,000,000	
전기	(주)동진	₩ 496,979,000	
소방·통신	(주)씨에이파트너스	₩ 363,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2-101-0013000 호	일금 일천칠백이십이억이천일백칠십만원정 ₩ 172,221,7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 분	내 용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p>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p>【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p>※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p>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p>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p>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p>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p>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p>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p> <p>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p> <p>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p> <p>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p> <p>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p> <p>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p> <p>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p> <p>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p> <p>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p> <p>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p>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p> <p>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p>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p>
-----------------------------------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경남홀딩스, 매도자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주)경남홀딩스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주)경남홀딩스 및 시공사 (주)포스코건설이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위탁자 (주)경남홀딩스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매수인에게 본 공급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인 (주)경남홀딩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는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 및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 (주)경남홀딩스에게 있다.

-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경남홀딩스 또는 매수인(분양계약자)은 분양계약체결, 해지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분양대금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 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매도자 겸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 호	우리자산신탁(주)	(주)경남홀딩스	(주)포스코건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성빌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81,304-2호 (망포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35811-0276999	174611-0002979

■ 더샵 신부센트라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더샵 신부센트라 견본주택	
	<p>■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82</p> <p>※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p> <p>※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p> <p>※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본 견본주택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p>
	<p>■ 분양문의 대표전화</p> <p style="text-align: right;">1533 - 2386</p>
	<p>■ 분양홈페이지 : http://www.더샵신부센트라.kr</p>